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개정판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된 「공탁규칙」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절차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개정판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1부. 끝.



법원행정처장



수신자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법원주사

이효정

법원사무관

신미영

심의관

이동기

국장

전결
02/07
조영

협조자

시행 사법등기심의관-788 (2024.02.08.) 접수 ()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443호(서초동) /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273 / 전송 02-599-2743 / lhj7678@scourt.go.kr / 공개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법원행정처

알 림

1.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는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형사공탁 운영반 등을 통하여 나온 내용들과 관련 질의 사항을 선별 정리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의 이해를 돕고, 해당 업무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내용은 법령 및 예규 등의 제·개정과 관련 판례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4. 1. 26. 시행되는 공탁규칙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된 형사공탁절차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 목 차 -

■ 제도 안내	1
Q1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1
Q2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Q3 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3
Q4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4
■ 적용대상	5
Q5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5
Q6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5
Q7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나요?	6
Q8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 은 어떻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7
Q9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7
Q10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8
■ 공탁신청 절차	10
Q11 형사공탁 신청 절차와 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0
Q12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11
Q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2
Q1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12
Q15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13
Q16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14
Q17 공탁서에 어떤 법령조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14
Q18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15

Q19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16
Q20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16
Q21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17
Q22 법원·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법은?	18
Q23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19
Q24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20
Q25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
Q26 공탁자의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21
Q27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인가요?	22
Q28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22
Q29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3

II 형사공탁 공고 및 사실 통지 24

Q30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4
Q31 공탁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되나요?	24
Q32 공탁소에서 검찰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팩스 전송을 하나요?	25
Q33 수 개의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이 다를 때 모든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나요?	26
Q34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문건으로 접수하나요?	26
Q35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27
Q36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27
Q37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탁된 사실을 고지하나요?	28
Q38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그 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	

나요?	29
Q39 개정 공탁규칙 부칙에 규정된 소급적용 대상 사건에 대하여 형사공판기록이 이미 검찰청에 인계된 경우 검찰에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면 되나요?	29
Q40 위 질문의 경우 검찰에는 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면 되는지요?	30
Q41 형사공탁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30
Q42 형사공탁 공고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31
Q43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31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물 지급절차 32

Q44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에 따라 공탁금 출급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32
Q45 2024. 1. 26. 이후에는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등에 동일인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34
Q46 개정 공탁규칙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개관	35
Q47 [검찰] 동일인 증명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되나요?	36
Q48 개정 공탁규칙의 시행(2024. 1. 26.) 전에 발급받은 동일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나요?	37
Q49 (시스템)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37
Q50 동일인 증명서에 문서확인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8
Q51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는?	38
Q52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기관?	40
Q53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동일인 증명서는 발급하는 법원의 심급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40
Q5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1
Q55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업무 처리는?	42
Q56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했는데, 동일인 증명서가 법원·검찰로부터 아직 송부 전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Q57 법원에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피해자(피공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3

Q58 피공탁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44
Q59 개정된 공탁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개선된 증명서 발급절차가 소급적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5
Q60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재송부 사실이 그 통지서에 표시되나요?	45
Q61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6
Q62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명의 그대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하고, 그 후 공탁소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47
Q63 강도살인사건 등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또는 상해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명서의 피공탁자는 사망한 피해자가 기재되나요?	47
Q64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삼단바코드(위변조방지바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8

■ 견본 기록	50
---------------	----

■ 제도 안내

Q1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에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 형사공탁특례 제도의 목적입니다.

Q2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 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때에 필요한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주요 내용]

관련 조문	상세 내용
토지관할(제1항)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공탁자(제1항)	형사 피고인으로 한정
공탁원인(제1항)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 기재(제2항)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을 기재
공탁원인사실 기재(제2항)	피해발생시점,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공탁통지 방식(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공탁물 수령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서면(제4항)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함

Q3 형사공탁이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다른 점은 무엇 일까요?

-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으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의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의 차이점 개괄]

구 분	형사변제공탁	형사공탁
피공탁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성·가명), 형사사건번호
공탁통지 방법	피공탁자 주소지에 배달증명	인터넷 공고
형사공탁사실 통지	-	공탁관 ⇨ 법원 및 검찰
동일인 증명서 발급	-	법원 또는 검찰 ⇨ 공탁소
출급청구 시 첨부서류	공탁통지서,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신분증(인감증명서 등)

Q4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Q5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 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Q6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합니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을 기재하고,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 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인데, “성명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의 도입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Q7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 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라는 점, 주식회사 등 법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의 요건인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회사에 대한 합의금 등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절차에 의할 수 있습니다.

Q8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어떻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는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에도 공탁소에서 공탁 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되므로 피공탁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9 강도살인죄 등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탁 신청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강도살인죄 등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해자 사망시점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고유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려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2차 가해가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공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 하였지만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어 피해자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탁자 성명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명칭을 기재하되, 괄호로 “사망” 사실을 기재합니다. 형사공탁절차상 불가피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 란에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 대한 공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가령, 공소장 등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홍00” 으로 기재된 경우 피공탁자 성명 란에 “홍00(사망)” 과 같이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사망한 피해자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이 불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한다.” 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공탁원인을 기재합니다.
- 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10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형사공탁의 경우 대상범죄를 소송절차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공탁법 제5조의2에서 그 대상채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공탁관의 심사범위를 고려할 때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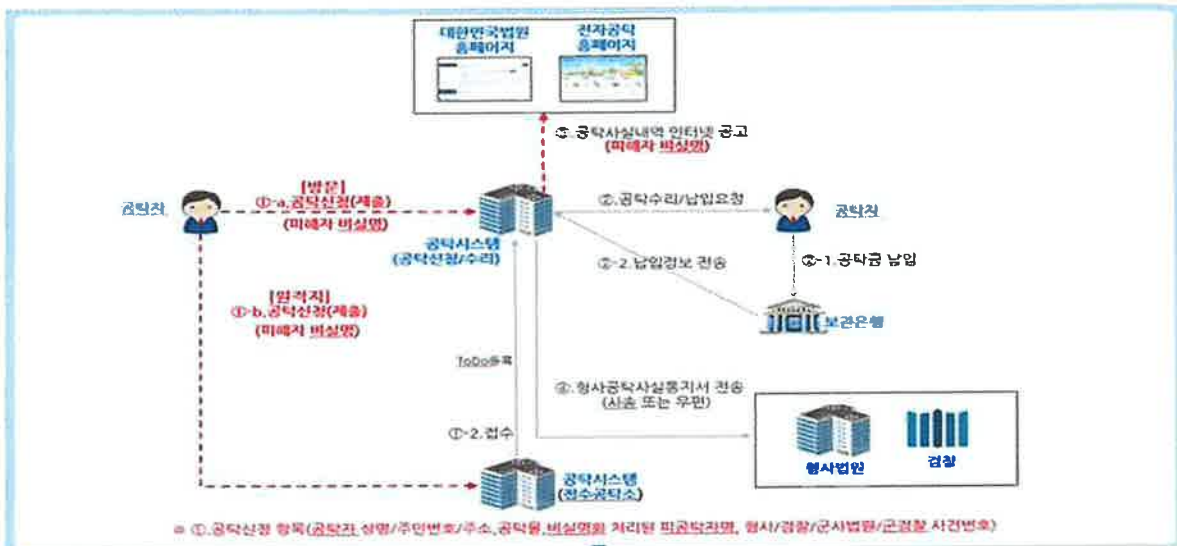
-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해당범죄의 부수적 보호법익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합의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과 현재 실무상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sc.scourt.go.kr>) - “양형기준” 참조).

■ 공탁신청 절차

Q11 형사공탁 신청 절차와 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형사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 법령조항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관은 형사공탁 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의 적식을 갖춘 신청인지 여부 등을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 공탁관의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인 경우 공탁신청을 수리하여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고, 공탁자는 공탁금을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게 되고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 가능) 공탁자가 공탁금을 보관은행에 납입한 때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형사공탁 사실을 전자공탁홈페이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 사실을 공고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공탁 신청절차 개괄]



Q12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조회 화면을 출력한 서면”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Q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법 제488조에 따라 채무이행지인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는 점과 피공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당하는지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소명서면이 첨부된 경우 민법 제487조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대한 형사공탁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격지 신청]

Q1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이 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서 출급이 가능한가요?

- 금전변제공탁신청이나 금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 공탁신청이나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167호).
- 사례의 경우 관할공탁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 접수공탁소가 부산지방법원 공탁소가 됩니다. 그런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내 소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할 외 공탁소에 공탁신청,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원격지 공탁소를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관할 공탁소에 송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지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공탁소 또는 발급기관(법원·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송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방식 개괄]

형사공탁 특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원격지 신청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
공탁신청	○	○	○
지급신청	○	×	○
공탁서 정정신청	○	×	×
열람·사실증명 신청	○	×	×

[전자공탁]

Q15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형사 공탁신청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출급청구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전자공탁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출급청구도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 공탁서 기재 】

Q16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할 수 있나요?

- 실체법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를 변제공탁 할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의 반대급부의 내용 란에 피공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 받을 목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형사공탁을 한 경우 형사공탁 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공탁서 기재 】

Q17 공탁서에 어떤 법령조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 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공탁과 구별하여 공탁권이 심사를 함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면 됩니다. 형사공탁서 법령조항란에 “공탁법 제5조의2”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자가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소에서 전산시스템 입력 시 공탁근거 법령조항란은 공탁법 제5조의2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탁서 기재]

Q18 공탁서상 피공탁자 성명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피공탁자의 성명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기호 등)이나 가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는 괄호 하여 가명임을 표시합니다.
- 따라서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면 되고, 일부가 비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재례: 홍길동, 홍길○, 홍□동, 성춘향(가명)
-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공소장을, 진술서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면 진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탁번호		년	급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법 제5조의2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명			1. 홍길동 2. 홍길○ 3. 홍□동 4. 성춘향(가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 또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기재하지 않는데(공탁규칙 제82조),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Q19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경우 공탁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 피고인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홍길동)을 알고 있더라도 공소장 등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홍길○)인 “홍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20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한 경우 외부에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나요?

- 공소장에 피해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란에는 피해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산입력 시 피해자 성명은 비실명처리가 되어 열람이나 사실증명은 피공탁자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 후 제공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공고 시에도 피공탁자 성명은 전산입력 된 형태로 비실명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 단,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보내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는 피공탁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 피공탁자 성명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법원,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서 기재]

Q21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 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 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의미하는데, 주로 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을 공탁원인사실 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및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등 참조).
- 특히 형사공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서 기재]

Q22 법원 · 검찰에 대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 · 복사가 불허가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원인사실 기재 방법은?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 · 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을 공탁원인사실 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또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 심사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서면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 · 복사 신청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또는 수사기록 열람 · 복사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탁서 기재]

Q23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을 이유로 형사공탁을 하려는 경우 공탁 원인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금전 공탁서(형사공탁)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상호, 별칭)		피공탁자	성명	1.홍길동 2.홍길○ 3.홍□동 4.성준향(가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주소 (본점, 주사무소)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관은행		은행지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시 ○○구 ○○로 ○진 ○, ○○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인관·복사 물리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관 공탁함			

-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등이 준용되어 피해자(피공탁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는 사정만을 소명하면 되고,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와 같이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기재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이 법령 명칭만 기재해도 됩니다.

[공탁 신청]

Q24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나요?

- 형사공탁의 대상 범죄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여 불허가 된 경우 그 사정을 소명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불허하는 재판장 등의 열람·복사신청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Q25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형사공탁의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가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사공탁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대상 범죄의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기재된 경우 동법 제24조가 적용되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면]

Q26 공탁자의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소정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 참조).
- 하지만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면]

Q27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은 어떤 것인가요?

- 형사공탁 특례 사유로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열람 등이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전산양식 A2200)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한편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또는 서면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발급받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22호 서식 참조).

Q28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도 포함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이 출력 또는 발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공탁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하여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 여부 확인 등).

[회수제한 신고]

Q29 형사공탁 회수제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변제공탁절차에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를 근거법령으로 하며 변제공탁의 특례로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 공탁자는 공탁신청 시에 형사공탁서 하단 “회수제한신고”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형사재판에서 민법 제487조에 기한 형사변제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형 2000-4 참조).

■ 형사공탁 공고 및 사실 통지

Q30 피해자는 자신 앞으로 공탁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서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탁사실통지]

Q31 공탁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되나요?

-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공탁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탁사건정보와 공탁당사

자 정보가 자동생성 되는데, 이를 출력한 후 그 통지서 원본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을 공탁기록에 편철합니다.

- 공탁소에서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를 하게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고, 형사공탁통지를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과 그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피공탁자별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자동 생성되어 출력되고, 형사재판부에서는 발급담당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 ‘문서확인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공탁관은 위 각 문서의 ‘문서확인번호’를 대조하여 동일인 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Q32 공탁소에서 검찰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팩스 전송을 하나요?

-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는 물론 검사도 형사공탁이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은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송부하기 전에 먼저 팩스로 전송합니다.

Q33 수 개의 공소장을 첨부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이 다를 때 모든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나요?

-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탁자가 제출한 “대법원홈페이지 사건조회 출력물”이나 “공판 계속 증명원 사본” 등을 통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하여 각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한편 위 공소제기 된 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병합심리 하는 경우라면 병합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합니다.

Q34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문건으로 접수하나요?

-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는 추후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판기록에 편철됩니다. 따라서 기존 형사문건의 대면 또는 우편접수 시의 업무례에 따라 문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별도의 문건코드로 등록되어있지 않으므로 법원 문건 접수의 방법에 의합니다. [MG101 문건 입력/수정] 화면에서 제출자구분 법원을 선택한 후 제출자란에 공탁관을 기재하고 제출자명을 기재합니다(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홍길동’ 또는 ‘공탁관 홍길동’). 문서명에는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Q35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고지하는 절차는?

-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고 선임계 등이 제출되어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5항), [MG545 동일인 확인 증명서 출력/고지서출력]에서 고지서 양식을 출력하고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사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의 고지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고지합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후단).

Q36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해야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마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후문의 ‘이 경우’는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 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를 의미

합니다. 즉 재판부가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을 받았고 피해자가 고지를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합니다(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고지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고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검찰에서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통해 형사공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3항(대검예규 제1329호)]. 따라서 피해자가 ‘형사공탁사실 고지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경우 형사공탁사실을 고지하면 됩니다.

Q37 검찰은 피해자 측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탁된 사실을 고지하나요?

-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참조].

Q38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그 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나요?

-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거나 재송부할 때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예규)’의 [별지 제4호 양식]을 사용하는데 그 양식에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됩니다.

Q39 개정 공탁규칙 부칙에 규정된 소급적용 대상 사건에 대하여 형사공판기록이 이미 검찰청에 인계된 경우 검찰에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면 되나요?

- 개정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하게 되고,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대상 사건에 대한 해당 형사공판기록이 이미 검찰청에 인계된 경우 검찰에만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Q40 위 질문의 경우 검찰에는 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면 되는지요?

-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게 되므로 이 경우 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면 됩니다.

[공 고]

Q41 형사공탁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고로 갈음하게 됩니다.
- [WKT157 형사공탁공고등록]에서 공고할 사건을 사건별/피공탁자별로 각각 게시(공고게시 버튼 활성화)하게 됩니다.
- 공고사항은 자동생성되고, 미리보기 기능을 통하여 공고될 문서를 사전에 열람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입력할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내용 입력이 가능합니다.

[광고]

Q42 형사공탁 공고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자신 앞으로 된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먼저 대법원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홈페이지의 형사공탁공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사건인 형사사건번호와 검찰사건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공고문(PDF 전자문서)은 출력과 저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 그 이외에도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도 형사공탁 공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민원에 대하여 공탁 사건을 안내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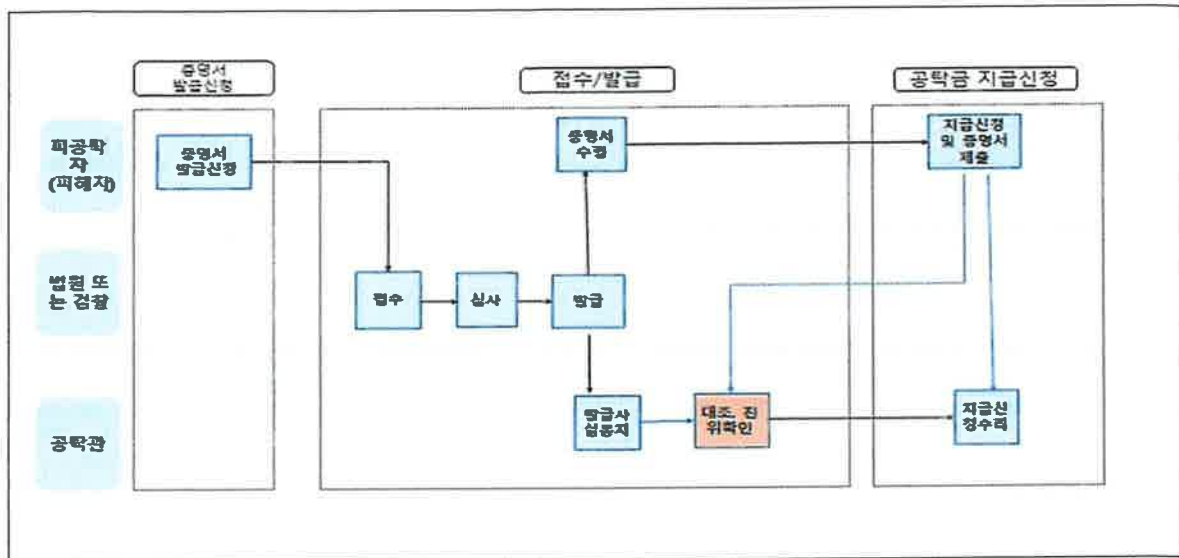
Q43 전자공탁 홈페이지 외 유관기관에서 형사공탁 공고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내용 등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형사공탁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
- 대한변호사협회(<https://www.koreanbar.or.kr>)
- 대한법무사협회(<https://kjaar.kab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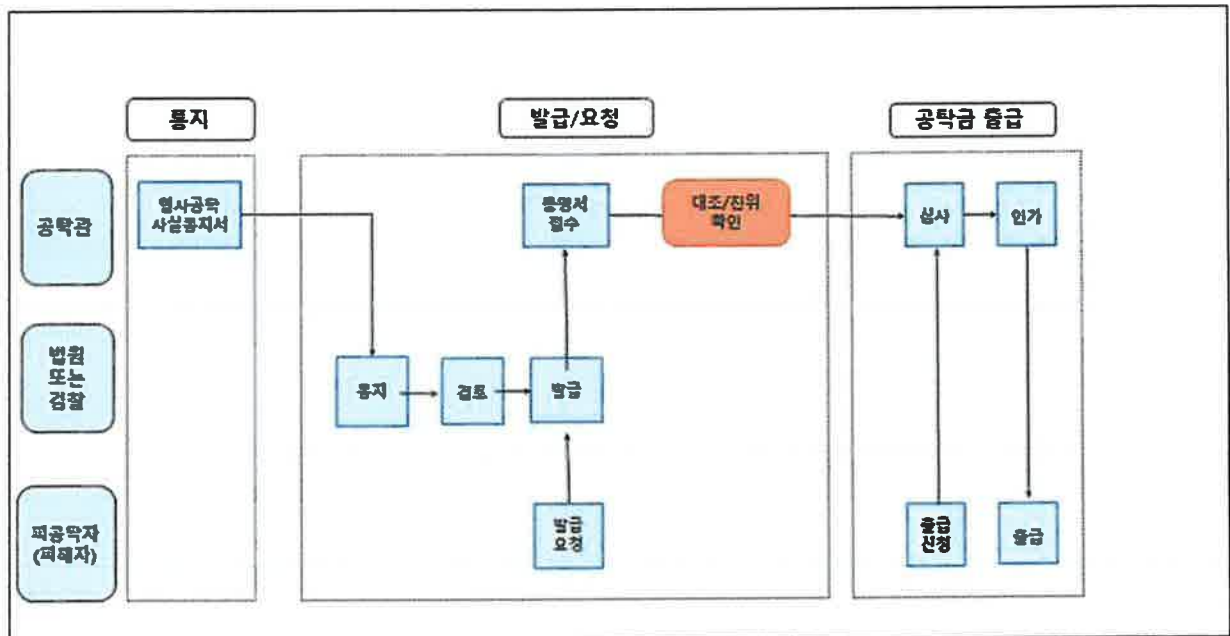
■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금 지급절차

Q44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에 따라 공탁금 출급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정 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 법원, 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피해자가 법원·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 ⇒ 피공탁자(피해자)가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



- [개정 후]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로 공탁사실통지 ⇒ 법원·검찰이 피해자 측에 공탁사실 고지가 이뤄질 수 있고 ⇒ 법원,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로 송부 ⇒ 피공탁자(피해자) 공탁금 출금청구



○ 개정 전·후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비교

	현행	개선
발급 시기	피공탁자의 발급신청 시	형사공탁사실통지 접수 시
발급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수령	방문 신청 불요(증명기관이 발급·송부)
피해자 발급 요청 (발급자면)	×	○
인지대 납부	○	×

- 공탁금 출급(또는 회수동의서 제출)을 위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하여 공탁소에 도달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5 2024. 1. 26. 이후에는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등에 동일인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나요?

-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에 관한 출급 및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공탁규칙이 개정되어 2024. 1. 26 시행되었습니다.
-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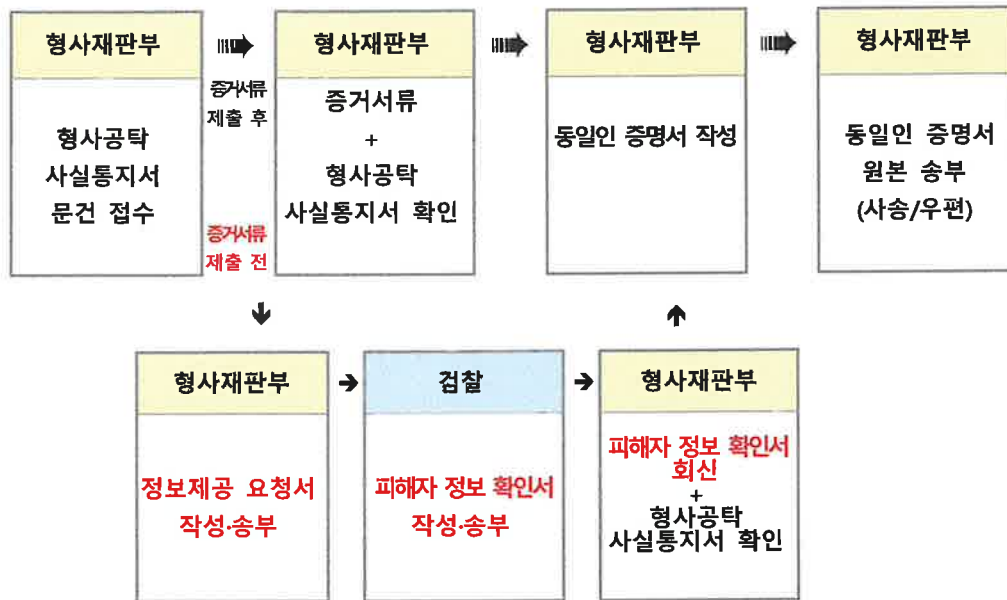
한 후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등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출급청구서와 나머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도달하였는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6 개정 공탁규칙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개관

- 일반사건¹⁾은 법원이, 가명사건²⁾과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에 인계된 사건은 검찰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해야 합니다(검찰의 경우 법원과 달리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피해자 동의 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반사건이지만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정보를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검찰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송부합니다.
-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는 발급기관(법원, 검찰)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지고, 발급이 지연될 경우 피공탁자(피해자)는 각 발급기관에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법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사건’이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한 모든 사건을 의미하며 일반사건에 있어서는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함



- 발급기관(법원·검찰)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한 후 공탁소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습니다.

Q47 [검찰] 동일인 증명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되나요?

-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합니다(대검예규 제2조 참조). 따라서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Q48 개정 공탁규칙의 시행(2024. 1. 26) 전에 발급받은 동일인 증명서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나요?

- 개정 전 규칙과 예규에 따라 피해자 인적 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적법하게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발급기관에서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여 공탁관이 동일인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탁금 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Q49 (시스템) 동일인 증명서 발급절차

- WCR545 화면에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접수 현황을 확인한 뒤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피공탁자의 ‘연락처’와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추가로 직접 입력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공탁규칙 및 예규에 따르면 공탁소에서 송부한 형사공탁사실통지서가 접수되면 법원 또는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공탁소나 법원, 검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 및 공탁소 송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0 동일한 증명서에 문서확인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탁소에서 피공탁자별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출력하면 문서확인번호가 자동 생성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 또는 검찰은 동일한 증명서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다시 기재하여 공탁소로 송부하 공탁관은 공탁서 등 공탁기록과 함께 동일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와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를 대조함으로써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1 동일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확인 절차는?

- 일반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공탁자의 정보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재판기록을 찾아 대조하고,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예시: 김본명, 김○○, 홍길동(가명)]으로 지칭되는 자가 맞는지 공소장 등이나 조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인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일반사건에서 검찰이 아직 법원에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피공탁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장 명의로 검찰에 ‘피공탁자 정보제공 요구서’를 송부하고, 검찰로부터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명사건의 경우 또는 사건이 확정되어 재판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경우에는 재판기록을 통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재판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사건의 경우 사건이 확정되기 전 형사공탁사실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검찰에 재판기록을 인계하기 전에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52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① 일반사건인지 가명사건인지 여부, ② 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 한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검찰에 기록이 인계되기 전 단계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어느 기관이 발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형사공탁사실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재판기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법원 발급	검찰 발급
판결 확정 전 일반사건 (증거기록 제출 여부 불문)	가명사건
	일반사건 중 판결 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

Q53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심급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하므로(개정 공탁규칙 제86조 제1항), 형사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원의 심급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거나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예규 제11조제2항 참조) 증명서 발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만약 하급심에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누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상급심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급심에서는 일반적인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확인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급심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의 분실 등으로 상급심에 증명서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5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
- 담당검사는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대검예규상 피해자에게 동일인 증명서 발급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업무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는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Q55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법원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형사재판부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와 당해 형사사건의 피해자 동일성 여부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피공탁자(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습니다.
- 통상 형사공탁사실접수통지가 있으면 법원 또는 검찰이 지체 없이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할 것이나, 어떠한 이유에서 발급·송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피공탁자(피해자)가 서면(재판양식 B4971)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면 됩니다.
- 서면(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이 아닌 전화로 재판부에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송부한 후 결과 보고서(재판양식 B4974)를 작성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면 됩니다.

Q56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했는데, 동일인 증명서가 법원·검찰로부터 아직 송부 전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발급기관인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6조제5항 등 참조). 이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은 피해자 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검찰이 증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이 검찰에 피해자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 정보 제공이 지연될 경우에도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전화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6조 제5항 및 예규 제13조제1항 참조).

Q57 법원에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검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검찰에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검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이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참조).

Q58 피공탁자는 동일한 증명서 발급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받은 형사재판부나 검찰은 증거서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피공탁자에게 증명서 발급·송부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피공탁자는 관할공탁소 또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나 검찰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송부 여부에 관하여 먼저 확인한 후 공탁소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해당 형사사건이 가명사건에 해당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형사공탁사실을 통지를 받은 검찰이나 1심 판결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동일한 증명서의 발급·송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경우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되기 전이라면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발급기관은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Q59 개정된 공탁규칙의 부칙에 따르면 개선된 증명서 발급절차가 소급적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법원행정처에서는 형사공탁 시행일인 2022. 12. 9.부터 개정 공탁규칙 제86조의 시행일 전일인 2024. 1. 25.까지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 중 공탁금이 출금되지 않은 공탁사건의 목록을 해당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해당 공탁소에서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 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합니다. 이를 재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각 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공탁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하기 전에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위하여 공탁소에 방문하는 등 출급을 요청한 경우 공탁관은 즉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출력하셔서 발급기관에 재송부하시기 바랍니다.

Q60 공탁소에서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재송부할 때 재송부 사실이 그 통지서에 표시되나요?

- 개정 공탁규칙 제89조에 따라 제정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공탁소에서 공탁사실통지서를 법원 또는 검찰에 재송부할 때 그 공탁사실통지서의 여백에 아래와 같이 재송부 취지(예규

별표 4)를 기재하여 송부합니다.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재송부	
대법원 행정예규 0000호 부칙에 의함	
○○지방법원(○○지원) 공탁관 ○ ○ ○	인

Q61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로 피공탁자임을 확인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인감증명서(서명한 경우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가 요구됩니다(예규 제20조 참조).
-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이 이뤄지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피공탁자가 제출할 수 있는 서면이기 때문에 회수동의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증명서에 의하여 피공탁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인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기관인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13조 참조).

Q62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명의 그대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송부하고, 그 후 공탁소에서 상속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 동일인증명서의 발급은 법원 또는 검찰이 발급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또는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명의를 그대로 기재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관할 공탁소에 송부하고,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관계 서류를 공탁관에 세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공탁관은 출급청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보정권고 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2307-2호).

Q63 강도살인사건 등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또는 상해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명서의 피공탁자는 사망한 피해자가 기재되나요?

-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이 인정된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는 점과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상속관계는 공탁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Q64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 “삼단바코드(위변조방지바코드)” 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의 진위확인 코너를 이용하여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위변조 방지바코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구글플레이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하단 우측)전체 메뉴 ⇨ 음성변환/진위확인 코너 선택 ⇨ 동일인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 스캔 ⇨ 원본 문서 확인

1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2 위변조방지바코드 검증

문서화단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3 위변조방지바코드 검증

문서화단의 바코드를 한 번에 모두 스캔하지 않습니다.



4 위변조방지바코드 검증

바코드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스캔하면서 이동해주세요.



5 위변조방지바코드 검증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스캔하면서 이동해 주세요.



6 위변조방지바코드 검증

모든 바코드가 인식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TIP 바코드 스캔할 때 주의사항



반식이 잘 안 되면 화면을 돌려주세요.



구름을 덮어 스캔하고 흔들림을 최소화하세요.



■ 견본 기록

2024금제50000

0

2024금제50000

피 공 탁 자 인 적 사 항
노 출 금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사건기록

사 건 번 호	2024금제50000	공 탁 종 류	형사공탁특례 공탁법제5조의2
공 탁 자	나공탁		
피 공 탁 자	홍○○		
비 고			
공탁금액 : ₩10,000,000(일천만원) 2024. 2. 7. 공탁신청 수리 1. 동일인 증명서 (피공탁자 홍○○) 발급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9. 도착			

종 국 사 유	종 국 일 자	기록보존종기	대공탁번호	부속공탁번호
			년 금	년 금
			제 호	제 호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공탁서 원본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피공탁자 란의 성명은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 가명 포함)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성명 란 :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홍길동” 이 기재된 경우 “홍길동” 을, “홍○동” 이 기재된 경우 “홍○동” 을, “홍길동(가명)” 이 기재된 경우에 “홍길동(가명)” 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공탁원인사실 란 : ① 피해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0시 00구 00로 0길 0, 00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공판 계속 증명원

사 건 2024고단12345호 상해
피 고 인 나공탁

위 사건의 공판이 귀원에 계속 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지
500원
첨 부

2024. 2. 7.

신청인 : 나공탁

위 증명합니다.

2024.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일참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4. 2. 1.

사건번호 2024년 형제6789호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신자

검사 나 검사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고인 나공탁(123456-78910111)

직업 회사원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999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도봉동 1234번지

죄명 상해, 폭행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호인 없음

II. 공소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8. 29. 23: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4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중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홍○○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홍○○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인)
신 청 인	성 명	나공탁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피고인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합의 또는 공탁				
대 상 기 록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재 판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5호	상해	제1형사단독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u>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u>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 년 2 월 9 일 신청인 나공탁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					
영 수 일 시	2024 . 2 . 9. 14 : 00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62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7.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8.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양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탁 공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금제50000
2. 공탁신청 연월일 2024. 2. 9.
3. 공탁물 금전
4. 형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5호
5. 검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6789호
6. 피공탁자 홍○○

7. 공탁물 출급 · 회수동의와 관련된 사항

가.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가 공탁소에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에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증명서 발급·송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원 또는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급할 수 있습니다.

다.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우편으로 이를 제출할 경우에는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증 첨부).

8. 공탁물 회수와 관련된 사항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를 있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 . . .

○○ 법원 공탁관 ○○○

[연락처 : ○○○-○○○○(○○법원 공탁계)]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금제50000호	
	공탁신청연월 일	2024. 2. 9.	
	공탁물	금 일천만 원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5호 상해
		검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6789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나공탁	
	피공탁자	홍○○	
첨부서면의 명칭		공소장	
문서확인번호		1234-5678-1234-5678	
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2024.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직인) [연락처 : 123-4567(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			

1. 위 통지서는 공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로서 통지서 기재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피공탁자가 공탁금액 확인을 원하는 경우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도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양식]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금제50000호	
	공탁신청연월 일	2024. 2. 9.	
	공탁물	금 일천만 원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5호 상해
검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6789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나공탁
	피공탁자		홍○○
정정 사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6788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6789호로 정정한다
문서확인번호			1234-5678-1234-5678
위 정정사항과 같이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기재사항이 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24.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직인) [연락처 : 123-4567(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			

[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5	형사제1단독
	상해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금제50000	형사공탁
	공탁물	금 10,000,000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2345호
		상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홍○○		
피공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문서확인번호		1234-5678-1234-5678		
공탁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일참여 (인)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2024년금제50000호		공 탁 금 액		한글 일천만원 숫자 10,000,000원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나공탁		피공탁자	성명	홍○○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3456-78910111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고
	한글 일천만원		(은행)		(은행)		
	숫자 10,000,000원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 해당란에 ☒ 하 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 시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 착오공탁			회수청구시		
비고 (첨부서류 등)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채권양도 원인서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동의서 ☐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 착오 증명서면 ☐ 기타()					
계좌입금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4년 2월 9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000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987654-1234567 성명 : 홍길동 인(서명) (전화번호 : 010-1234-5678)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24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 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서가 공탁소에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